

2022년 하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 보고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2022년 하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

도내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정착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 기동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6조

1 감사실시 개요

- (기간) 2022. 12. 5.(월) ~ 12. 16.(금) 10일간
- (대상) 7개* 시·군, 16개소¹⁾(도 2, 시·군 13, 민간보조 1)
 - 5억원 이상 304개소(도 85, 시·군 189, 민간 30) 중 공사 준공예정일, 공정률, 민간전문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시·군당 2개소) 목포, 장성, 함평, 진도, 장흥, 완도, 영암 / (도) 2개소
- (감사반) 2개 반 20명 - (총괄) 기술감사팀장
 - (전남도) 5명, (민간전문) 총 20명 중 15명 분야별 참여

2 감사 중점사항

- (설계도서) 건설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적정성, 공사원가 산정 및 설계변경 사항, 주요 자재 반영 적정 여부 등
- (시공·품질·안전관리) 계획공정의 적정성, 주요 구조물 시공 상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실행 상태 등
- (현장관리 등) 현장기술자 배치 및 근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의무사항, 하도급 관리 등
- (민간전문가 참여)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자문²⁾ 실시

1) 도로(2), 하천(4), 건축(3), 상·하수도(2), 해양(1), 농업기반(2), 관광(1), 민간보조-건축(1)

2) 4개 분야 15건(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장비 사용 시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점지압 확보 철저 등)

3 감사 결과

【총 평】

○ (민·관 합동 기동감사 실시) 금번 기동감사는 5억원 이상도 및 시·군에서 시행한 15개 사업과 3억원 이상 민간보조 1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 감사관’ 15명이 참여하였음

- ▶ (예산 낭비 사전 예방) 사업장별 시공·품질·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과 부당한 설계변경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 (건설시공 정착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사업 시행과정에서 부실·조잡 시공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

○ (도 신뢰도 향상 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민간전문가와 청취하여 분야별 자문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에 노력하였음

* 시공·품질·안전과 예산 등 공사 추진과 관련된 사항

【 처분 요구사항 】

(단위 : 건, 명, 백만원)

총계 (가:나)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D)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외 시정 (b)			
						소계 (a)	회수	감액	재시공	보완 시공				
22	2 (2명)		2 (2명)	20	16 (414)	16 (414)	- -	16 (414)	- -	- -	-	4	-	-

* 공무원 2명(장흥군 2)

4 처분 목록

구분 연번	대상 기관	제 목	조치계획(안)		
			신분상	행정상	
				시정 주의	재정상 (천원)
계	도 및 시·군	지적 16건 / 처분건수 22건	훈계 2	16 4	16건 감 액 414,712

구분 연번	대상 기관	제 목	조치계획(안)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1반		지적 8건 / 처분건수 11건		시정 8 주의 3	8건 감 액 248,444
1	영암	○○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25,557
2	〃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52,125
3	함평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58,123
4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20,315
5	장성	○○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35,058
6	〃	○○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21,235
7	완도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15,171
8	〃	○○지구 발기반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20,860
2반		지적 8건 / 처분건수 11건	훈계 2	시정 8 주의 1	8건 감 액 166,268
1	도 도로관리 사업소	○○지구 교차로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5,485
2	전남개발 공사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21,161
3	장흥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1	시정 1 주의 1	감 액 26,961
4	〃	○○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사업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1	시정 1	감 액 29,104
5	목포	○○거리 가로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34,823
6	〃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6,500
7	진도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9,091
8	진도 (민간보조)	○○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33,143

5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1반 - 8건 】

① [영암군] ○○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영암군(군민안전과)은 '21년 6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하천 정비사업(3,322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군민안전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성토면 고르기 중복 계상 등*으로 2,55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철근 시공상세도(간단 8, 복잡 19, 복잡 74) 미작성

 과다 계상된 사업비 2,556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② [영암군]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 영암군(환경기후과)은 '22년 4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5,160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기후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가동보 설치 시 흙쌓기 및 월기 단가산출서 과다 반영 등*으로 5,213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기존 철근콘크리트 깨기 시 발생한 고철 공제 미반영 등

 과다 계상된 사업비 5,213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3 [함평군]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은 '19년 8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2,625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상하수도과)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등*으로 5,81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측중계 미설치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 등에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상하수도과) 공사관리관은 '21년 3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검사 3회 중 2회 입회하지 않고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 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5,812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입회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4 [함평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함평군(안전건설과)은 '18년 12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4,313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강관비계 1,631m² 중 409m²를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2,03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강관비계 다리 미설치, 기존 철근콘크리트 깨기 시 발생한 고철 공제 미반영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 등에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 공사관리관은 '21년 11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검사 2회 모두 입회하지 않고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 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032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입회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5 [장성군] ○○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장성군(건설과)은 '20년 5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하천 정비사업(19,501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축중계,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3,50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 등에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 공사관리관은 '20년 9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기성·준공검사 11회 모두 입회하지 않고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건설공사 총괄 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506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입회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6 [장성군] ○○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장성군(도시재생과)은 '21년 9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건축공사(2,305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도시재생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가설을타리 미정산(재료비→6개월 손료),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등*으로 1,34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규준틀 미설치, 되메우기 시 램머 다짐 미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도시재생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목적 외 사용(교통 신호수, 비계 수직망) 등으로 776만원을 감액·반환 요구하지 않은 채 방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123만원을 감액 및 정산하도록 "시정요구"

7 [완도군]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완도군(체육진흥과)은 '22년 3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
○○공원 조성사업(2,126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흙쌓기 12,441m³
다짐 시 살수 미 실시 등*으로 1,51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 조치
- * 보강토 응벽 뒷채움 다짐 시 10톤 롤러 미사용 등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517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8 [완도군] ○○지구 발기반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완도군(건설과)은 '21년 12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지구
발기반정비사업(994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사토처리 운반거리 미
정산 등*으로 2,08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 조치
- * 측구공 유로폼 일부 미설치 및 배수공 기초콘크리트 미시공 등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086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2반-8건 】

① (도 도로관리사업소) ○○지구 교차로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는 '21년 7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지구 교차로개선사업(2,123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사업소(도로보수과)는 '22. 12. 16. 감사일 현재 도로 시공 확인을 위해 설치한 수평기준틀 10개소가 망실되어 재설치(100만원)가 필요한 데도 미조치
 - 또한 802m³ 사토운반을 미 실시하여 54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549만원을 감액하고 망실된 수평기준틀 10개소를 재설치(100만원) 하도록 "시정요구"

② [전남개발공사]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 전남개발공사(건축사업처)는 '22년 2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건립공사(6,599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건축사업처)는 '22. 12. 16. 감사일 현재 기준틀 일부 미설치 (33개소 → 5개소), 보조기층 포설·다짐 시 살수 미 실시 등*으로 1,43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 조치 *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건축사업처)는 '22. 12. 16. 감사일 현재 목적 외 사용(공사 안내 간판), 증빙자료 미첨부(신호수) 등으로 318만원을 감액·반환 요구하지 않은 채 방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등에 모든 건설공사에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고,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 * 공사의 종류에 따라 0.3% ~ 1.8% 이상 산정
 - 그런데 위 공사(건축사업처)는 '22. 12. 16. 감사일 현재 지출 증빙의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하여 환경관리비 83만원을 감액·반환 요구하지 않은 채 방치
- “공공하수도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관리청은 하수관거 공사 시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건축사업처)는 '22. 12. 16. 감사일 현재 도급 공사비에 포함된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비 283만원을 감액하고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116만원을 감액 및 정산하도록 "시정요구"

3 [장흥군]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장흥군(재난안전과)은 '19년 11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637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난안전과)은 시공상세도 미작성 등*으로 2,69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울타리 설치 중복계상, 침사조 미설치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제5조 등에 발주청은 수행사업의 특성 및 필요한 소요인력 역량 검토 후 사업관리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난안전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사업특성 및 역량평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관리방식 중 시공감리로 선정 후 용역 수행

- ☞ 수행사업의 특성 및 필요한 소요인력 역량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한 업무 담당자 1명에게 "훈계요구"
-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696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사전에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등을 검토한 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주의요구"

4 [장흥군] ○○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사업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은 '22년 1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사업 건축공사(4,988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기술센터)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가설사무소 설치면적 미정산(9m×3m → 6m×3m),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등*으로 2,23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규준틀 미설치, 시공상세도 미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기술센터)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목적 외 사용(투광램프), 증빙자료 미첨부(계몽표지판 등) 등으로 516만원을 감액·반환 요구하지 않은 채 방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등에 모든 건설공사에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고,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 * 공사의 종류에 따라 0.3% ~ 1.8% 이상 산정
 - 그런데 위 군(농업기술센터)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지출 증빙의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하여 환경관리비 164만원을 감액·반환 요구하지 않은 채 방치
- 「공사시방서」 제1장 등에 현장 내·외부의 정리정돈, 청소를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BF관을 쌓을 시에는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기술센터)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BF관 등을 평탄한 곳에 놓지 않고,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지 않은 채로 관리

- ☞ 현장 내·외부를 정리 정돈하지 않고, 공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을 과다 계상하고 감액하지 않은 공사감독관 1명에게 "훈계요구"
-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910만원을 감액 및 정산하고, 앞으로 현장에 반입된 자재 평탄한 곳에 놓고,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시정요구"

5 [목포시] ○○거리 가로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목포시(도시재생과)는 '20년 7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거리 가로조성공사(1,241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재생과)는 '22. 12. 16. 감사일 현재 도로지장물(맨홀, 빗물받이) 미시공 등*으로 3,48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부직포 신규단가 낙찰을 미적용, 아스콘 수량 미정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제4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관계 서류도 작성·비치·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재생과)는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검측대장 등의 서류 작성 미비로 업무수행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482만원을 감액하고,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6 [목포시]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목포시(하수과)는 '16년 10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 하수관거 정비사업(3,566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하수과)는 '22. 12. 16. 감사일 현재 가드레일 고철 공제 처리 미반영 등*으로 65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미정산

☞ 과다 계상된 사업비 650만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7 [진도군]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부적정

- 진도군(건설교통과)은 '21년 12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4,379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교통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피복석 운반장비(덤프트럭 15톤 → 덤프트럭 24톤) 미조정으로 90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기술인 배치하여 품질관리계획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교통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사업장에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승인 통보하지 않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함

☞ 과다 계상된 사업비 909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를 승인 통보하도록 “시정요구”

8 [진도군^{민간보조}] ○○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진도군(수산지원과)은 '18년 12월 ○○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는 '21년 12월부터 '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건립사업(8,585백만원)을 추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 등에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에 따르고,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지원과)은 '22. 12. 16. 감사일 현재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수평기준틀 일부 미설치(24개소→3개소) 등*으로 3,314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토공 되메우고 다지기 시 램머 미시공, 품질관리비 미정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등에 높이 5m 이상 동바리를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및 수행, 안전관리비 계상,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지원과)과 보조사업자는 '22. 12. 16. 감사일 현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받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314만원을 감액 및 정산하고,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시정요구"

【 처분요구서 】

목 차

【1반 - 8건】

① ○○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22
②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24
③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26
④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30
⑤ ○○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34
⑥ ○○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38
⑦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43
⑧ ○○지구 발기반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45

【2반 - 8건】

① ○○지구 교차로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48
②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51
③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	58
④ ○○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사업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63
⑤ ○○거리 가로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70
⑥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73
⑦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76
⑧ ○○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80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영암군(군민안전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암군은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2021. 6. 25. 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하천 정비사업	1.08	3,322	2,613	709	2021.06.25. ~ 2023.11.28.	○○○○(주) (○○○)	

자료 : 영암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암군(군민안전과)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5,557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2건		-	25,557	-	-	△ 25,557
1	성토면고르기와 법면다짐 중복 계상		3,184㎡	2,967	-	-	△ 2,967
2	철근 시공상세도 미작성	간단	8장	843	-	-	△ 843
		보통	19장	3,116	-	-	△ 3,116
		복잡	74장	18,631	-	-	△ 18,631

자료 : 영암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영암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암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25,557천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영암군(환경기후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암군은 하천의 상하류 이동통로 확보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태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2022. 4. 7.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3	5,160	2,556	2,604	2022.04.07 ~ 2024.03.31	○○○○ (○○○)	

자료 : 영암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암군(환경기후과)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52,125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3건	-	83,634	-	31,509	△ 52,125
1	가동보 설치 시 흙쌓기 및 헐기 단가산출서 과다 반영	269m³	79,082	269m³	44,255	△ 34,827
2	어도 설치 시 자연석 깔기 미시공	128m³	4,552	-	-	△ 4,552
3	기존 철근콘크리트 깨기 시 발생한 고철 공제 미반영	-	-	605m³	- 12,746	△ 12,746

자료 : 영암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영암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암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52,125천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생활하수 미처리로 주변수역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수질오염 방지,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2019. 8. 7.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5.8km	22,625	18,236	4,389	2019.08.07. ~ 2024.05.15.	○○○○(주) (○○○)	건설 공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53개월	1,904	1,904	-	2019.08.07. ~ 2024.06.04.	○○○○(주) (○○○)	건설 사업 관리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과)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58,12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3건	-	58,123	-	-	△ 58,123
1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1식	25,198	-	-	△ 25,198
2	가설구조물 안전성 미검토	6회	29,119	-	-	△ 29,119
3	축중계 미설치	1식	3,806	-	-	△ 3,806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는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58,12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등으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58,123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공사관리관 현장 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 공사관리관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 공사관리관³⁾은 2019. 3. 23.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준공검사 3회⁴⁾ 중 2회⁵⁾를 참석하지 않아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가 소홀해져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58,123천 원 감액 조치하고(시정)
-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2021.02.03.~2021.07.04.), ○○○(2021.07.05.~2022.07.04.), ○○○(2022.07.05.~현재)

4) 1차분 준공(2021.03.23.), 2차분 준공(2021.04.27.), 3차분 준공(2022.02.23.)

5) 1차분 준공(2021.03.23.), 2차분 준공(2021.04.27.)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안전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소하천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하천 연안의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18. 12. 26.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축제 3.12km 교량 6개소	14,313	9,579	4,734	2018.12.26. ~ 2023.03.21.	○○○○(주) (○○○)	건설 공사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43개월	1,294	1,294	-	2019.08.07. ~ 2024.06.04.	○○○○(주) (○○○)	건설 사업 관리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0,315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3건	-	36,320	-	16,005	△ 20,315
1	강관비계 미설치	1,631㎡	33,040	1,222㎡	24,765	△ 8,275
2	강관비계 다리 미설치	970m	3,280	-	-	△ 3,280
3	기존 철근콘크리트 깨기 시 발생한 고철 공제 미반영	-	-	670㎡	- 8,760	△ 8,760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는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20,315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시공상세도 미작성 등으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20,315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공사관리관 현장 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지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 공사관리관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 공사관리관⁶⁾은 2021. 11. 9.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준공검사 2회⁷⁾ 모두 참석하지 않아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가 소홀해져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20,315천 원 감액 조치하고(시정)
-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2021.02.03.~2021.07.04.), ○○○(2021.07.05.~2022.07.04.), ○○○(2021.07.05.~2022.07.04.),
○○○(2021.07.05.~2022.07.04.), ○○○(2022.07.05.~현재)

7) 1차분 준공(2021.11.09.), 2차분 준공(2022.11.16.)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성군(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성군은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수환경과 하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2020. 5. 25.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하천 정비사업	4.7km	19,501	8,385	11,116	2020.05.25. ~ 2023.06.08.	(주)○○○○ (○○○)	건설 공사
○○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7개월	1,427	1,427	-	2020.05.25. ~ 2023.06.08.	(주)○○ (○○○)	건설 사업 관리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성군(건설과)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도서
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35,058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3건	-	35,058	-	-	△ 35,058
1	축중계 미설치	1식	2,986	-	-	△ 2,986
2	가설방음벽 미설치	1식	16,093	-	-	△ 16,093
3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1식	15,979	-	-	△ 15,979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
인 ○○○은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35,058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축중계 미설치 등으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35,058천원이 설계
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공사관리관 현장 기성 및 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
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지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 공사관리관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성군(건설과) 공사관리관⁸⁾은 2020. 9. 17.부터 2022. 12. 13.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기성 및 준공검사 11회⁹⁾ 모두 참석하지 않아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가 소홀해져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장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성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35,058천 원 감액 조치하고(시정)
-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 ○○○(2020.05.25.~2021.07.19.), ○○○(2021.07.19.~2022.09.30.), ○○○(2022.09.30.~현재)

9) 기성(7회) : 1차분-1회(2020.09.17), 2차분-1회(2020.12.17.), 3차분-1회(2021.01.20.), 2회(2021.04.27.), 4차분-1회(2022.05.04.), 5차분-1회(2022.08.30.), 2회(2022.10.31)

준공(4회) : 1차분(2020.12.17.), 2차분(2021.04.27.), 3차분(2021.12.08.), 4차분(2022.11.24.)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센터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성군(도시재생과)

내 용

1. 업무개요

장성군은 지역주민의 민원 불편 해소 및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1. 9. 24.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센터 건축공사	연면적 991.87㎡ (지상2층)	2,305	2,035	270	2021.09.24. ~ 2022.12.31.	○○○○(주) (○○○)	건설 공사
○○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용역	1식	19	19	-	2021.10.13. ~ 2022.12.31.	○○건축사 사무소 (○○○)	비상주 감리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성군(도시재생과)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13,47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8건	-	26,583	-	13,110	△ 13,473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1	가설울타리 정산 (재료비→6개월 손료)	177m	8,737	177m	5,247	△ 3,490
2	기준틀 미시공(귀)	4개소	688	-	-	△ 688
3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991.87㎡	1,457	-	-	△ 1,457
4	건축물보양(살수) 미 실시	2,572.8 ㎡	1,896	-	-	△ 1,896
5	건축물보양(하드롱지) 미 실시	293.2㎡	688	-	-	△ 688
6	터파기 정산 (기계90%인력10%→기계100%)	1,219.1 ㎡	6,284	1,219.1㎡	2,082	△ 4,202
7	되메우기 시 램머 미시공	168.4㎡	948	168.4㎡	633	△ 315
8	신규 비목에 대한 낙찰률 미 적용 (안전관리비, 평판제하시험)	2식	5,885	2식	5,148	△ 737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 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기준²⁾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안내 간판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성군(도시재생과)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3]과 같이 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 신호수 등으로 집행하였거나 증빙자료를 미

-
- 2)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등
2. 안전시설비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지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첨부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7,762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 요구하지 않고 있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감액·반환 대상 금액	비 고
계	2건	7,762	
1	2021. 11월 목적외사용(교통 신호수)	570	
2	5월 목적외사용(비계수직망)	6,000	
	제비율	1,192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비 32,410천원의 약 2.4%에 달하는 7,762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성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21,235천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체육진흥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2022. 3. 18.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공원 조성사업	축구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다목적구장 1개소	2,126	1,205	921	2022.03.18. ~ 2023.03.18.	(주)○○○○ (○○○)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체육진흥과)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15,17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3건	-	54,501	-	39,330	△ 15,171
1	보강토 옹벽 뒷채움 다짐 시 10톤 진동 롤러 미사용	1,572m³	13,371	1,572m³	9,375	△ 3,996
2	보강토 옹벽 잡석 부설 및 다짐 시(램머 → 1톤 롤러) 사용	56m³	526	56m³	179	△ 347
3	흙쌓기 다짐 시 살수차 미사용	12,441m³	40,604	12,441m³	29,776	△ 10,828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15,171천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구 발기반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영농개선과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2021. 12. 28.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시공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시공 감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지구 발기반정비사업	농로포장 L=1,931m 배수로 L=1,355m	994	640	354	2021.12.28. ~ 2023.01.27.	(유)○○○○ (○○○)	
○○ 발기반 정비사업 감리용역	12개월	109	109	-	2022.02.28. ~ 2023.03.03.	(유)○○○○ (○○○)	시공 감리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완도군(건설과)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0,860천원을 감액하는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6건	-	50,387	-	29,527	△ 20,860
1	사토처리 운반거리 미정산	3.1km	3,870	0.5km	2,860	△ 1,010
2	측구시공시 유로폼 일부 미설치	532㎡	22,997	402㎡	17,379	△ 5,618
3	콘크리트 포장시 비닐깔기 및 비닐양생 미실시	3,757㎡	3,030	1,860㎡	1,500	△ 1,530
4	토공 되메우기 다짐 미실시	950㎡	6,756	950㎡	1,484	△ 5,272
5	파형강관 기초콘크리트 미시공	23㎡	3,900	7㎡	1,350	△ 2,550
6	콘크리트포장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시 살수 미실시 등	754㎡	9,834	754㎡	4,954	△ 4,88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20,860천원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구 교차로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2021. 7. 19.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지구 교차로개선사업	L=474m	2,123	1,908	215	2021.07.19. ~ 2023.07.08.	○○○○(주) (○○○)	건설 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	24개 월	1,652	1,652	-	2021.08.25. ~ 2023.08.24.	(주)○○ (○○○)	건설 사업 관리

자료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도서에 반영된 수평기준틀 10개소가 망실 되었는데도 재설치를 하지 않고, 사토 운반 802m³를 실시하지 않아 공사비 5,485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5,485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기준틀 망실에 따른 시공 기준면 확인 불확실 및 과다계상된 공사비 5,485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5,485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망실된 수평기준틀 10개소를 재설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개발공사(건축사업처)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개발공사는 분산되어 있던 통일·청소년 인프라를 통합해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포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 2. 22.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센터 건립공사	2동, 3,957㎡	6,599	4,561	2,038	2022.02.22. ~ 2023.07.16.	○○○○(주) (○○○)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관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

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건축사업처)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14,316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3건	-	70,979	-	56,663	△ 14,316
1	규준틀 미시공	33개소	10,681	5개소	8,179	△ 2,502
2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3,957㎡	5,785	-	-	△ 5,785
3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정산 (살수 미시공)	1,766㎡	54,513	1,766㎡	48,484	△ 6,029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기준²⁾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 2)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등
 2. 안전시설비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지원체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안내 간판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건축사업처)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3]과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공사안내 간판으로 집행하였거나 증빙자료를 미첨부하여 집행하였는에도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3,183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 요구하지 않고 있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감액·반환 대상 금액	비 고
계	5건	3,183	
1	3월 증빙자료 미첨부(안전벨트) 및 목적외사용(공사안내 간판)	1,305	
2	5월 증빙자료 미첨부(신호수)	340	
3	6월 증빙자료 미첨부(신호수)	170	
4	8월 증빙자료 미첨부(신호수)	170	
5	9월 증빙자료 미첨부(노무자 휴게소)	545	
	제비율	653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비 71,990천원의 약 4.4%에 달하는 3,183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³⁾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건축사업처)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4]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내역에 반영된 가설울타리 위 분진망 설치비용을 환경관리비로 청구받았으나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829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 요구하지 않고 있다.

[표 4] 환경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3) 환경관리비 산출 :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의 합)와 폐기물 처리비의 합

연 번	지적내용	감액·반환 대상 금액	비 고
계	1건	829	
1	3월 분진망설치(가설울타리 중복)	659	
	제비율	170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829천원이 부당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 일괄발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하수도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관리청은 하수관로 설계 시 시공이나 사업을 준공할 때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지방서에 언급하여야 하며, 관로의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거 공사 표준지방서」를 준수하여 실시하되 「하수관거정비공사 CCTV검사 및 수밀검사(환경부, 하수67712-549(2003. 5. 22.)호)」에 하수관거 공사 시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함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토록 통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하수관거 공사 시 하수관의 CCTV검사 및 수밀검사는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전남개발공사(건축사업처)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 CCTV검사 및 수밀검사를 일괄 발주하여 CCTV검사비 844천원, 수밀검사비 988천원 및 제비율 1,001천원 등 총 2,833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도급 공사비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시공자가 시행한 공사를 자신이 검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개발공사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21,161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환경부 공문에 따라 하수관거 CCTV 검사 및 수밀검사를 분리 발주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재난안전과)

훈 계 대 상 자 ○○○○과 지방시설○○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19. 11. 19.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L=0.83km	5,637	3,364	2,273	2019.11.22.~ 2022.12.30.	주○○○○ (○○○)	건설 공사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9.5개월	275	275	-	2020.02.22.~ 2023.05.03.	(합)○○○○ (○○○)	건설 사업 관리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시설○○ ○○○은 2020. 4. 20.부터 2022. 12. 16. 현재까지 ○○○○과에서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관리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한 후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발주청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 인력에 대한 발주청의 역량을 검토한 후 사업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¹⁾를 통하여 사업 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²⁾에 맞는 사업관리방식을 배정³⁾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기본구상을 마련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 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등 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한 후 적합한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재난안전과)은 2020. 2. 22. 계약체결 후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수행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사전 사업관리방식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사업관리방식의 적합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
- 1)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2.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3.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4.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5.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 2) 공사특성(30%), 사업여건(25%), 공사수행방식(15%), 발주청 역량(30%) 평가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배점기준을 10% 이내에서 조정 적용
 - 3)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재난안전과)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도서에 반영된 수평기준틀 10개소가 망실 되었는데도 재

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26,96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5건	-	38,434	-	11,473	△ 26,961	
1	시공상세도 미작성	10매	2,296	-	-	△ 2,296	
2	토공 되메우기 및 다짐 중 컴팩트 다짐 미실시	3,437 m³	9,411	3,437 m³	2,585	△ 6,826	
3	전석쌓기 잡석부설 및 다짐 중 컴팩트 다짐 미실시	1,658 m³	7,410	1,658 m³	4,617	△ 2,793	
4	울타리 설치품 중복계상 (울타리 현장설치도)	1식	1,681	-	-	△ 1,681	
5	침사조 미설치	2개소	1,219	-	-	△ 1,219	
	제경비	1식	16,417	1식	4,271	△ 12,416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합)○○○○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는 공사 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계상된 26,96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수평기준틀 망실에 따른 시공 기준면 확인 불확실 및 과다 계상된 공사비 26,961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담당자 지방시설○○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계상된 26,961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망실된 수평기준틀을 재설치하며(시정)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 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등 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한 후 선정될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사업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농업기술센터)

훈 계 대 상 자 ○○과 지방시설○○○ ○○○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첨단농업기술 보급 및 농촌지도기반 확충으로 새 기술 신속보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2. 1. 4.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축공사 및 비상주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사업 건축공사	연면적 1,968㎡	4,988	3,652	1,336	2022.01.04. ~ 2022.12.31.	(주)○○○○ (○○○)	건축 공사
○○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사업 건축감리용역	12개월	44	44	-	2022.02.21. ~ 2023.01.16.	○○건축사 사무소 (○○○)	비상주 감리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시설○○○ ○○○은 2022. 1. 7.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 ○○과에서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2,298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7건	-	60,362	-	38,064	△ 22,298
1	가설사무소 등 규격 변경 (9*3m→6*3m)	3동	4,009	3동	2,910	△ 1,099
2	기준틀 미시공	25개소	3,808	3개소	566	△ 3,242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3	먹매김 중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1,969㎡	12,005	1,969㎡	8,544	△ 3,461
4	파일 관입 깊이에 따른 정산	137m	11,017	115m	8,862	△ 2,155
5	시공상세도 미작성	10장	2,280	-	-	△ 2,280
6	흙쌓기 및 되메우기 시 살수 미시공	9,907.7㎡	25,350	9,907.7㎡	16,970	△ 8,380
7	품질시험비 정산	9종	1,893	1종	212	△ 1,681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22,298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기준²⁾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도급

-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 2)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등
2. 안전시설비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등

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안내 간판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3]과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투광램프 등으로 집행하였거나 증빙자료를 미첨부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5,163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 요구하지 않고 있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연 번	지적내용	감액·반환 대상 금액	비 고
계	3건	5,163	
1	3월 증빙자료 미첨부(계몽표지판)	186	
2	5월 목적외 사용(투광램프)	2,465	
3	7월 증빙자료 미첨부(안전난간)	1,200	
	제비율	1,312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안전관리비 49,560천원의 약 10.4%에 달하는 5,163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³⁾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흥군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비 산출 :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의 합)와 폐기물 처리비의 합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4]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환경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차광막 설치비용을 환경관리비로 청구받았으나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1,643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 요구하지 않고 있다.

[표 4] 환경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감액·반환 대상 금액	비 고
계	2건	1,643	
1	3월 목적 외 사용(차광막 설치)	886	
2	5월 목적 외 사용(차광막 설치)	340	
	제 비 율	417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1,643천원이 부당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현장 자재정리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제1장 01015 1.13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방서 제7장 7.1.2에 따르면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며,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게 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반입 자재는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평탄한 장소에 놓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그림]과 같이 자재 등이 평탄한 곳에 놓지 않고,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았으며,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지 않은 채로 관리하고 있다.

[그림] 자재 및 폐기물 현장보관 현황



그 결과 반입 자재에 유해한 상처가 발생할 경우 시공 품질의 확보가 어렵고, 폐기물 등이 정리 정돈되지 않고 흐트러져 있어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 ① 현장 내·외부를 정리 정돈하지 않고, 공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을 과다 계상하고 감액하지 않은 지방시설○○○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29,104천원을 감액 조치하며, 앞으로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평탄한 곳에 놓고,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거리 가로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목포시(도시재생과)

내 용

1. 업무개요

목포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 7. 15.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공사비			공사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계	도급액	관급자재		
○○거리 가로조성공사	L=1.9	1,241	311	930	2020.07.15. ~ 2023.03.31	주○○○○ (○○○)

자료 : 목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목포시는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목포시(도시재생과)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 34,823천원을 설계변경 금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4건	-	162,943	-	128,120	△ 34,823	
1	도로지장물 수량 미정산 (맨홀, 빗물받이, 제수변)	219개	33,721	42개	7,775	△ 25,946	
2	신규단가 낙찰을 미적용 (부직포 설치)	4,134㎡	10,924	4,134㎡	9,483	△ 1,441	
3	순환아스콘 수량 정산	1,151톤	118,298	1,081톤	110,862	△ 7,436	관급

자료 : 목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사감독자 및 시공자 비치 서류 확인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내

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업무수행지침 제11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일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민원처리부, 검측대장, 재해 발생현황, 협의내용 등의 관리 대장, 기성 및 준공 감독조서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업무수행지침 제116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 현장교육 실적부,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등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목포시(도시재생과)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검측대장, 공사 감독일지 등의 서류 작성이 미비하여 주요 공정이 설계 및 지방서 내용대로 적 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으로써 디자인 도로 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목포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34,823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공사 관련 서류를 보완·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목포시(하수과)

내 용

1. 업무개요

목포시는 2016. 10. 25.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 하수관거 정비사업	L=1,384m	13,558	10,515	3,043	2016.10.25.~ 2022.12.31.	○○○○(주) (○○○)	건설 공사
○○ 중점관리지역 및 하수관거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72개월	3,358	3,358	-	2017.01.03.~ 2022.12.31.	(주)○○○○ (○○○)	건설 사업 관리

자료 : 목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목포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목포시(하수과)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6,50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가드레일 고재처리 미반영 등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2건	-	45,630	-	39,130	△ 6,500	
1	가드레일 고재처리 미반영	-	-	6.9톤	△ 2,770	△ 2,770	
2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미정산	30개월	45,630	30개월	41,900	△ 3,730	

자료 : 목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은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계상된 6,50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6,500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목포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6,500천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건설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21. 12. 28.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그라우팅 L=1,364m 등	7,031	6,893	138	2021.12.28.~ 2024.11.15.	(주)○○ (○○○)	건설 공사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감리용역	26개월	339	339	-	2021.12.31.~ 2024.02.18.	○○○○ (○○○)	건설 사업 관리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

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설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건설교통과)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9,091천원을 설계변경 금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1건	-	185,778	-	176,687	△9,091	
1	피복석운반(덤프15톤→24톤)	12,150m³	142,276	12,150m³	135,314	△6,962	
	제경비	-	43,502	-	41,373	△2,129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 소속 ○○○는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9,09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9,091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품질시험계획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별표 8] 5. 나. 7)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는 벌점 부과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및 변경 품질시험계획을 검토 후 검토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는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및 진도군(건설교통과)은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및 변경 품질시험계획을 검토·승인 통보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고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품질관리계획을 검토·승인하지 않는 등 품질시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9,091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품질시험계획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수산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협동조합(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 12. 31.부터 보조금 12,393백만원(국비 1,750, 도비 2,750, 군비 2,700, 자부담 5,193)을 교부결정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2021. 12. 21.부터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상주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상주감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 자재			
○○센터 건립사업(건축)	연면적 4,596㎡	8,585	5,550	3,035	2021.12.21. ~ 2022.12.28.	(주)○○○○ (○○○)	건설 공사
○○센터 건립사업 감리용역	13개월	303	303	-	2021.12.21. ~ 2023.01.21.	(주)○○○○ (○○○)	상주 감리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축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수산지원과)과 보조사업자는 2022. 12. 1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33,14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4건		46,900		13,757	△ 33,143
1	구조부 먹매김 미 실시	4,761 m³	11,735	4,761 m³	4,008	△ 7,727
2	수평기준틀 미 설치	24개소	1,988	3개소	314	△ 1,674
3	되메우고 다지기 시 램머 다짐 미 시공	2,821 m³	12,952	2,821 m³	9,092	△ 3,860
4	품질관리비 미 정산	32종	1,344	9종	343	△ 1,001
5	제 경비	1식	18,881	-	-	△ 18,881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상주감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감리인 ○○○는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33,14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33,143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3.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¹⁾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

-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받기,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주청 등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발주청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판정한 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제100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 등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 등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무선 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술사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과 보조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고,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를 판정받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에게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수산지원과)과 보조사업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만 검토 받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받지 않았으며, 건설사업자에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판정받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기안전점검 등

2)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을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설 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33,143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시정)